

# 2027년도 간호사 국가시험 종합안내서

2026. 8.



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시험평가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 목 차

|                         |    |
|-------------------------|----|
| I 시험개요 .....            | 1  |
| II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    | 2  |
| 1.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 2  |
| 2. 응시원서 접수안내 .....      | 3  |
| III 출제정보 .....          | 4  |
| 1. 시험정보 .....           | 4  |
| 2. 예시문항 .....           | 5  |
| IV 시험시행 .....           | 6  |
| 1. 시험방법 .....           | 6  |
| V 합격자발표 .....           | 11 |
| 1. 합격자 결정방법 .....       | 11 |
| 2. 합격자 발표 .....         | 11 |
| VI 면허증 발급 .....         | 12 |
| VII 기타 .....            | 16 |
| 1. 증명서 발급 안내 .....      | 16 |
| 2. 답안카드 열람 안내 .....     | 17 |
| 3. 응시확인서 안내 .....       | 17 |
| 4.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률 .....   | 18 |
| 5. 간호사 국가시험 분석결과 .....  | 18 |
| VIII 자주하는 질문(FAQ) ..... | 19 |

# I 시험개요

## □ 2027년도 제67회 간호사 국가시험

※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 등 세부사항은 해당회차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 제67회 간호사 국가시험                                                                                                                                                                                                                 |
|----------|---------|-------------------------------------------------------------------------------------------------------------------------------------------------------------------------------------------------------------------------------|
| 응시원서 접수  | 기간      | • 인터넷 접수 : 2026. 10. 13.(화) 09:00 ~ 20.(화) 18:00                                                                                                                                                                              |
|          | 응시 수수료  | • 추후공지                                                                                                                                                                                                                        |
|          | 장소      |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국시원 홈페이지] - [응시원서접수]메뉴<br>※ 단,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외국학교 등 졸업자로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국시원 별관 고객지원센터(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에 방문, 관련서류 제출 및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함<br>(원서접수 기간 중 09:30부터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 시험장 공고   |         | • 2026. 12. 9.(수)                                                                                                                                                                                                             |
| 시험장 선택기간 |         | • 2026. 12. 9.(수) ~ 13.(일)                                                                                                                                                                                                    |
| 응시표 출력기간 |         | • 2026. 12. 16.(수)부터 시험당일                                                                                                                                                                                                     |
| 시험시행     | 일시      | • 2027. 1. 22.(금)                                                                                                                                                                                                             |
|          | 장소      | [국시원 홈페이지] - [시험정보] - [직종별 시험정보] - [직종선택] - [시험장소]                                                                                                                                                                            |
|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필기도구 지참                                                                                                                                                                                              |
| 합격자 발표   | 일시      | • 2027. 2. 16.(화)                                                                                                                                                                                                             |
|          | 방법      | • [국시원 홈페이지] - [시험정보] - [합격자조회]메뉴<br>•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SMS 통보                                                                                                                                                 |

## II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 1.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간호법」 제4조, 동법 부칙(법률 제20445호, 2024. 9. 20.) 제3조, 「의료법」 부칙(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제9조, 「의료법」 부칙(법률 제11252호, 2012. 2. 1.) 제2조 또는 「의료법」 부칙(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간호법」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응시자격** : 「간호법」 제4조, 동법 부칙(법률 제20445호, 2024. 9. 20.) 제3조

(1) 제4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2026.9.11. 시행)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2) 「간호법」 부칙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제3조(간호사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의료법」 부칙 (법률 제8366호, 2007.4.11.) 제9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4) 「의료법」 부칙 (법률 제11252호, 2012.2.1) 제2조(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평가인증기구가 해당 과목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과목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결격사유 등 : 「간호법」 제7조, 제9조

- (1)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등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2) 제9조(응시자격의 제한) 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2. 응시원서 접수 안내

※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2026년도 하반기 및 2027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Ⅲ 출제정보

#### 1. 시험정보

##### □ 시험문제수, 배점 및 시험시간

| 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응시자<br>입장시간 | 시험시간                 | 1문제당<br>배점 |
|--------------------------|-------------------------------------------------|-------------|----------------------|------------|
| 1                        | 1. 성인간호학(70)    2. 모성간호학(35)                    | 08:30       | 09:00~10:35<br>(95분) | 1점         |
| 2                        | 1. 아동간호학(35)    2. 지역사회간호학(35)<br>3. 정신간호학(35)  | 10:55       | 11:05~12:40<br>(95분) | 1점         |
| 점심시간 12:40 ~ 13:40 (60분) |                                                 |             |                      |            |
| 3                        | 1. 간호관리학(35)    2. 기본간호학(30)<br>3. 보건의약관계법규(20) | 13:40       | 13:50~15:10<br>(80분) | 1점         |

##### □ 시험과목 및 문제형식

| 시험과목                                                             | 문제수(총점)         | 문제형식         |
|------------------------------------------------------------------|-----------------|--------------|
|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br>정신간호학, 간호관리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 295문제<br>(295점) | 객관식<br>5지선다형 |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범위\(링크\)](#)

## 2. 예시문항

1. 분만실 간호사가 아침 8시에 5명의 임부를 사정한 결과이다. 이 중 태아 전자감시기(fetal monitoring)를 즉각적으로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할 경우는?

- 1) 임신 38주째에 양막 파수가 된 경우
- 2) 나이트라진 검사에서 노란색인 경우
- 3) 1시간 동안 경관 개대가 1 cm 더 열린 경우
- 4) 경관 개대가 3 cm이고 후기감퇴를 보이는 경우
- 5) 임신 15주에 경관결찰술(맥도널드수술)을 받은 후 제왕절개수술을 대기 중인 경우

2. 무의식 상태인 70세 남자가 2시간 동안 똑바로 누워있었다. 체위변경을 하고자 할 때 올바른 방법은?

- 1) 상체를 30도 올려준다.
- 2) 무릎을 굴곡시켜 옆으로 눕힌다.
- 3) 신체선열을 유지하여 바로 다시 눕힌다.
- 4) 복부에 베개를 대어주고 옆드려 눕힌다.
- 5) 무릎 밑에 베개를 대어주고 머리를 낮춘다.

3. 신생아가 출생 직후 거품이 있는 침을 흘리며, 수분을 공급했을 때 퉁퉁 거리고 심한 기침을 하면서 입술 주위와 얼굴에 청색증이 관찰되었다. 간호사정을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 1) 병력을 수집한다.
- 2) 빨기 반사를 확인한다.
- 3) 심잡음이 있는지 청진한다.
- 4) 위관을 식도로 조심스럽게 넣어본다.
- 5) 호흡기 분비물에 대한 균 배양 검사를 준비한다.

## Ⅳ 시험시행

### 1. 시험방법

#### □ 응시자 유의사항

- 필기시험은 지필시험 방식으로 응시자는 배부된 문제지를 받아 답안카드에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
- 가답안의 공개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로부터 5일간 공개하며, 일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은 시험문제지의 ‘응시자 안내 사항’을 참고
  -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최종 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은 심사에서 제외함
-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자는 시험일 응시자 입장완료시간(시험시간표 참조)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함. 아울러 시험일 1교시 시험에 결시한 자는 이후 시험교시에 응시 불가
  -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 불가
  -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 불가
  - 일부 시험장의 경우 시험시작 1시간 40분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
-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필기도구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 불가

---

**< 신분증의 범위 >**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 운전면허증
  - 여권(만료일 이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대한민국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
  - 국가보훈등록증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 영주증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 ※ 위의 신분증 중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확인서비스 포함)도 인정
- 

- 응시표가 없는 경우, 시행본부에서 응시번호만 확인된 경우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단,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AI 스마트안경, 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이어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
- 매교시 시작 전 시험실에서 안경 착용자를 대상으로 AI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 점검하며, 적발 시 감독관 및 본부요원의 조치에 따라 회수함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를 제출할 것
- 시험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교시 성적을 ‘0점’ 처리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시간에는 답안카드 작성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적절히 배분
-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
- 배탈·설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해당 교시 종료 시까지 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 함
- 시험실에 시계가 있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
- 계산, 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시계 등)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 등으로 처리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람
- 시험실내 응시자 개인물품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응시자는 개인물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 □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

- 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연필, 적색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음
  - 답안카드는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채점
  - 답안카드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연필, 적색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색깔과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카드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필히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함
  - 답안카드는 구기거나 이물질로 더럽히는 것 금지
  - 답안카드에는 시험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정답 외에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하지 말 것
-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로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 가능
  -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답안카드를 교체 가능
  - 수정테이프는 응시자가 요구 시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며,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도 사용 가능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하며,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는 사용 불가
  -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함
- 답안카드에 시험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주의 요망

- 간호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동영상(링크)
- 2027년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링크)
- 응시지역 변경 안내동영상(링크)

## □ 부정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향후 시험응시가 3회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

---

###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답안카드, 실기작품 및 그 제작방법, 시험기기로 작성하는 답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제지(시험기기를 포함한다)를 보고 자신의 답안을 작성(제작)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을 교환하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을 제출하는 행위
  8.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단, 문제지를 공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9. 시험 전·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인쇄물
    -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10.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11.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문제 또는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12.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3. 시행본부 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 
14. 컴퓨터시험(CBT) 중 휴대용 저장매체(USB 메모리 등)를 시험기기에 연결하는 행위
  1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 으로, 신고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여 확인

## □ 응시자 준수사항

○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 처리

---

### 응시자 준수사항의 기준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행위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3.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
  4.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5.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부정행위자의 기준 제10호의 물품 제외)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지품을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6.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
  7. 실기시험 시행 중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낙서, 그림, 메모 등의 형태로 종이 등에 적거나 신체에 기록하는 행위
  8. 시험장에서 감독관 또는 다른 응시자 등 타인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피해를 주는 행위
  9. 그 밖에 원장이 정한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
- 

기타 유의사항은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

## V 합격자발표

### 1. 합격자 결정방법

간호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하며,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 취소 가능

#### □ 필기시험

-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2. 합격자 발표

#### □ 합격자 발표예정일

- 2027. 2. 16.(화)

#### □ 합격자 확인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http://www.kuksiwon.or.kr)
-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휴대전화기 문자(SMS) 통보(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전화기 연락처 기재자에 한함)

## Ⅵ 면허증 발급

### □ 면허발급 절차

- 간호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면허증 발급



### □ 면허신청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면허(자격)증 교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직종별 제출서류와 함께 국시원으로 우편 발송
- 우편, 방문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우편 신청은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 (단, 방문접수를 하더라도 우편접수보다 면허 발급이 먼저 처리되지 않음)
- 보내실곳 :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별관 자격관리부

### □ 면허(자격)증 발급 진행상황

- 국시원 홈페이지 - [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에서 확인

### □ 면허신청 제출 서류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 졸업증명서
- 의사진단서

##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 과거 서식에 직접 작성하거나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없이 신청한 경우 접수 불가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에 인쇄된 바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작성 시 면허증 수령 방법을 우편 또는 방문으로 선택
- 면허(자격)증 수령주소로 등기우편이 발송되므로 주소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  
**(잘못된 주소를 입력한 경우(동호수 미기재 등) 면허(자격)증 발송 불가)**

※ (주소변경) 수기로 수령 주소를 수정할 경우 반영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수정하여 면허(자격)증 교부신청서 재출력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방문으로 선택 시 ‘방문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수신 후 국시원 별관 자격관리부로 방문하여 수령(신분증 필참)</li><li>· 우편으로 선택 시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수령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동호수 미기재 등 잘못된 주소 입력 시 등기우편 발송이 불가)</li><li>· 수취인이 없을 경우 반송되므로 실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기재(대리인 수령 가능)</li></ul> |
|-------------------------------------------------------------------------------------------------------------------------------------------------------------------------------------------------------------------------------------------------------------------|

- 신청서 출력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에서 작성 후 출력
- 면허신청을 위한 사진변경 또는 개명으로 인한 이름 변경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나의 정보관리]-[개인정보 정정 신청]-[개인정보 정정 온라인 신청]에서 해당 증빙 파일 업로드하여 신청

### ○ 졸업증명서

- 졸업증명서 제출 시 증명서 하단에 ‘전자증명서(PDF파일) 출력 시 출력물은 사본으로 인정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접수 불가
-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처리인과 직인 및 수입증지 등 날인이 확인되어야 접수 가능

- 졸업예정자는 졸업일 이후 발급받아 제출(졸업예정증명서 불인정)
- 사본 불인정

## ○ 의사진단서

- 의사진단서 유효기간 : 서류도착(미비서류 보완일)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 없음
-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전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 사전 확인

| 인정되는 문구                                                    |
|------------------------------------------------------------|
| <b>*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b> |

※ 법에서 정한 문구와 다른 문구가 기재된 경우에는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진단서 문구를 확인

| 구분   | 인정(O)             | 불인정(X)             |
|------|-------------------|--------------------|
| 진단내용 | 정신질환자             | 정신병, 정신병자          |
|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      |                   |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 |
|      |                   | 농자·아자·맹자           |
| 진단결과 | ~(이)가 아님, 증명(판단)함 | 사료(추측·소견)됨         |

- (신청자)성명·생년월일, 진단내용, 진단일(발급일), 의료기관명 및 소재지, (의사)성명(서명 또는 직인)·면허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불인정
- 사본 불인정

## □ 결격사유 조회 서류 관련(외국인 합격자에 한함)

- 결격사유조회를 위한 제출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 영문일 경우 번역·공증 받지 않고 원본으로 제출 가능하나, 한국어 또는 영어를 제외한 언어로 기재된 서류는 번역·공증 후 제출
- 서류 도착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국가   | 발급처       | 관련서류명     | 내용                               |
|------|-----------|-----------|----------------------------------|
| 미국   | 주한미국대사관   | AFFIDAVIT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사실<br>유무<br>범죄기록 사실유무 |
| 캐나다  | 주한캐나다대사관  |           |                                  |
| 뉴질랜드 | 주한뉴질랜드대사관 |           |                                  |
| 대만   | 주한타이페이대표부 | 성명서       |                                  |
| 중국   | 해당시 공증처   | 미수형사처분공증서 | 범죄기록 사실유무                        |
| 일본   | 일본경찰청     | 범죄경력증명서   | 범죄기록 사실유무                        |
|      | 해당 시청     | 신분증명서     | 금치산자·파산선고 사실유무                   |

※ 위 국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고객상담센터(1544-4244)로 문의

#### □ 외국학교 등 졸업자 제출 서류 관련

- 면허(자격)교부 신청서, 의사진단서, 유효한 면허(자격)증 사본 각 1매 제출
- ※ 외국에서 받은 면허(자격)의 유효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끝난 후부터 면허(자격) 발급이 진행됨

## Ⅶ 기타

### 1. 증명서 발급 안내

- 국시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증명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증명서는 위/변조 방지 바코드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원본 증명서를 복사할 경우 원본과 구분할 수 있는 복사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인터넷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수령한 기관은 국시원 홈페이지 원본확인 메뉴에서 원본의 진위여부를 확인 가능

#### □ 이용안내

- 국시원 홈페이지에서는 1999년 하반기 이후 시행한 시험의 응시자에 한해 다음 서비스가 제공됨
  - 성적 열람(과목별 취득 점수 및 평균 점수)
  - 성적증명서·합격확인서 발급
- \* 1999년 상반기 이전 시행한 시험의 응시자는 전화(1544-4244)로 문의

#### □ 수수료 안내

- 성적 열람 : 무료
- 성적증명서·합격확인서 발급 : 1,000원

#### □ 신청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 - [증명서 발급 신청]

#### □ 증명서 발급 안내(링크)

## 2. 답안카드 열람안내

- 답안카드 열람(필기 시험에 한함)은 응시자 본인이 작성한 답안카드에 한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확인 가능
- 답안카드 열람을 위한 **방문예약**은 희망일 1일 전 18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신청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 - [답안카드 열람 방문신청]
  - 열람방법 : 국시원이 안내한 장소에 **직접 방문**
-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예약 후 회신을 받은 응시자는 방문 희망일시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국시원이 안내한 장소에서 ‘답안카드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신속하게 답안카드 확인이 가능
- 시험문제가 공개되는 시험의 경우 응시자가 직접 본인의 문제지를 지참하여야 하며, 국시원에서는 문제지를 제공하지 않음.

## 3. 응시확인서 안내

- 응시확인서는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는 응시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없으며, 응시확인서 발급은 2011년 이후 시험부터 가능

### □ 응시확인서 발급 절차

#### ○ 합격자 발표 전

- 로그인 > [면허·자격·증명서] > [응시확인서 발급] > 발급신청 > 담당자 승인(발급 승인) > 발급 완료(출력 가능)
- ※ 발급 신청부터 출력까지 **2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 합격자 발표 후

- 로그인 > [면허·자격·증명서] > [응시확인서 발급] > 발급 신청 > 발급 완료(출력 가능)
- ※ 해당 시험의 결시 응시자는 응시확인서 발급이 불가
- ※ 발급신청과 동시에 완료되어 출력 가능

#### 4.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률(링크)

- 국시원 홈페이지 - [시험정보] - [출제자료] - [연도별 국가시험 합격률]

#### 5. 간호사 국가시험 분석결과(링크)

- 국시원에서는 매년 홈페이지에 직종별 분석 결과를 공지.
- 국시원 홈페이지 - [시험정보] - [출제자료] - [국가시험 분석결과] 에서  
확인 가능

#### □ 고객센터(1544-4244) 운영

- 운영시간 : 09:00 ~ 18:00
- 운영시간 이외에는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질문하기] 메뉴를 이용

## Ⅶ 자주하는 질문(FAQ)

### Q1. 시험일정은 언제 알 수 있나요?

☞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일정은 시험일 90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제로는 매년 7월 중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고되는 시행계획에서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가 ‘추후공지’로 공지될 수 있습니다.

시험시행계획의 공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시자격
2. 시험일정
  - 1) 응시원서 접수기간
  - 2) 응시수수료
  - 3) 시험일
  - 4) 합격자발표 예정일
  - 5) 필기시험 지역
  - 6) 시험장 공고일
3. 접수방법
4.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5.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표
6. 실기시험 범위 및 응시자 준비물
7. 합격자 결정방법
8. 응시자 유의사항
9. 부정행위 및 응시자 준수사항
10. 합격자 발표 및 면허(자격)증 교부신청

단, 시험 장소는 시행지역만 발표됩니다. 구체적인 시험장은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에 별도로 공지됩니다.

## Q2. 시험 중 소지할 수 없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없지만 시험 중 소지하고 있다가 부정행위 또는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분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전자기기와 통신기기를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으면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는 처분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개통하지 않아 통신기능이 없는 휴대전화라 하더라도 부정행위 처분 대상 물품이 됩니다. AI 스마트안경, 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다기능시계, 카메라펜,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의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는 시험 중에 소지하면 안됩니다.

전자기기, 통신기기를 가지고 시험장에 온 경우, 시험시작 전에 시험 진행 방송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소지한 기기 일체를 가방에 넣어서 교실 앞으로 제출하거나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매교시 시작 전 시험실에서 안경 착용자를 대상으로 AI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 점검하며, 적발 시 감독관 및 본부요원의 조치에 따라 회수합니다.

이외에 시험 관련 자료나 교재 등을 소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며, 향후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3. 시험 장소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시험장소 공고일은 시행계획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소는 시험일 30일 전에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홈페이지 상단의 “시험정보” - “직종별 시험 정보” 메뉴를 클릭한 후, 해당 직종을 선택하시면 해당 직종의 시험일정, 응시자격 등 시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시험장소”를 클릭하면 시험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한 응시자는 응시표 출력 기간에 국시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시험장소를 확인하거나, 응시표를 출력하여 시험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4.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 응시자는 접수할 때 선택하여 국시원이 지정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시원은 미리 응시자의 인적 사항 정보를 각 시험장에 배포하며, 감독관은 이것으로 응시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응시자의 인적 사항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응시자가 배정된 시험장에만 배포하므로, 응시자의 정보는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응시자는 지정된 시험장 이외의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Q5. 시험장소를 선택할 수 있나요?

☞ 국시원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응시자가 직접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험장 선택제’를 2급 응급구조사 및 치과위생사를 제외한 필기시험 전 직종에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때 응시지역만(예: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등) 선택한 후, 시험장 공고일에 응시지역별 시험장을 확인하여 본인이 선택한 응시지역 내 시험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시험장 선택기간동안 “시험장소 선택”메뉴에서 원하는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시험장 잔여좌석이 없을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며 기간 내 시험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시험장소를 국시원에서 임의로 배정하게 됩니다. 시험장이 1개 뿐인 응시지역은 별도로 시험장소를 선택하지 않아도 시험장 선택기간 경과 후 일괄 배정될 예정입니다.

시험장 선택기간 동안에는 시험장만 선택·변경할 수 있으며, 응시지역은 변경할 수 없으니 응시원서 접수 시에 희망하는 응시지역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Q6. 응시지역과 시험장을 변경할 수 있나요?

☞ 필기시험 장소 변경은 다음과 같이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 지역(시험장)에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선착순으로 변경됩니다.

| 구분                 | 신청방법(인터넷)                                                                                                                                                                 |
|--------------------|---------------------------------------------------------------------------------------------------------------------------------------------------------------------------|
| ○ 타 지역으로의 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장소 공고 7일전까지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li> <li>• 응시표 출력일 이후 시험시행일 5일전까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지역(시험장)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li> </ul> |
| ○ 동일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표 출력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지역(시험장)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li> </ul>                                                           |

※ 시험장 선택제 해당 직종의 경우 시험장 공고일로부터 5일간은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응시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시험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Q7.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험문제를 열람할 수 있나요?

☞ 2026년도 하반기 및 2027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문제 공개 직종>

간호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위생사, 2급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기사

※ 단,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2급 응급구조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경우 비공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험문제는 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홈페이지-고객소통-이의신청』에서 시험 종료일로부터 5일 간 가답안 확인이 가능하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 간 최종 정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8. 예비마킹을 해도 되나요?

☞ 답안카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정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이외의 필기구(볼펜, 연필, 샤프, 펜 등)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답안카드 채점은 OMR 판독기가 아닌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실시합니다. 컴퓨터용 흑색 수정사인펜 이외의 연필, 적색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색깔에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한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카드에 컴퓨터용 흑색 수정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를 깨끗이 지워야 합니다.

답안을 잘못 작성하거나 잘못 표기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해야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Q9. 시험 중 화장실에 갈 수 있나요?

☞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할 수 없으며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도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응시자는 시험 전에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고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시간조절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감독관에게 답안카드와 문제지를 제출한 후 소지품은 교실에 둔 채로 화장실에 갈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해당 교시 종료 타종 이후에 입실 가능합니다.

## 2027년도 간호사 국가시험 종합 안내서

발행일 2026년 8월

발행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발행인 임종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

1544-4244

[www.kuksiwon.or.kr](http://www.kuksiwon.or.kr)